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최민희·김기표·김우영

김 윤・김종민・김 현

민병덕 • 박민규 • 박해철

박희승 • 복기왕 • 양부남

이광희 • 이정헌 • 이훈기

정동영 · 정진욱 · 조인철

허성무 · 황정아 의원

(20학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. 또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하고,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 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 는 한편,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기됨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,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추천하거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0조의2(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요구 등) ① 국회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

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의 심의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8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제18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) ① ~ ③ (생 략) 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심의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, 보수 등 처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심 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추천하거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촉 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⑤ ~ ⑦ (생 략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. 1. ~ 6. (생 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 <신 설> 된 사람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0조의2(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요구 등) ① 국회는 심의위원

- 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고, 그 결과와 사유를 지 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 다.
-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.